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보완내용 안내 및 진단서 작성 예시 송부

1.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힘쓰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12월 개정 고시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중 보완사항을 알려드리니 진단서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변경내용 -

보완 전	보완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없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의사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도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붙임 1의 기질성 정신질환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동 질환으로 입원중인 경우 담당의사도 발급 가능</u>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의사 발급 가능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관련,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 내용 기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한편 진단서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근로능력평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예시(붙임 2)를 보내드리니 향후 정확하고 충실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회원 및 산하 지화단체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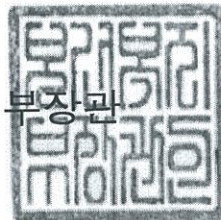
4. 또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시 어려운 계층임을 감안,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시 1페이지 당 1천원을 받는 등 수급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 발생

- 붙임
1. 기질성 정신질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 진단서 발급 가능) 목록 1부.
 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예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주무관 김삼섭 행정 사무관 이승묵 자립 지원 전결 2013. 2. 14. 과장 고흥우

협조자

시행 자립지원과-826 (2013. 2. 14.) 접수

우 143-7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75 / <http://www.mw.go.kr>

전화번호 020-2023-8458 팩스번호 02-2023-8451 / 333sup@korea.kr / 대국민 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